

[별표 3] <개정 2003.2.28>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제15조의8관련)

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기준	관계법령	비고
1. 중요산업시설 ①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③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100분의 50면제 전액면제 전액면제	초지법 제23조제4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제1항제5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2.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①국방·군사시설 ②공공청사 ③도로·하천·철도 ④공항·항만시설	전액면제 전액면제 전액면제 100분의 50면제	초지법 제23조제4항제2호 및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한함

⑤농지개량시설	전액면제		
⑥국토보존시설	전액면제		
⑦다목적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전액면제		
⑧학교시설			
· 초등학교시설	100분의 50면제		
· 기타 학교시설	100분의 50면제		
⑨청 소 년 전 용 시 설 및 체육시설	100분의 50면제		
⑩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전액면제		
⑪관광시설	100분의 50면제		
⑫기타 공용·공공용 의 경우	100분의 50면제		시·도지사와의 협의하 여 초지전용허가를 한 것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함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 용지		초지법 제23조제4항제3 호	
①초지를 조성한자 (상속인을 포함한 다)가 전용하고 자 하는 경우	전액면제		
①초지를 조성한자 (상속인을 포함한 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면제		
②타인이 조성한 초지 로서 초지조성 완 료후 5년 이상 경 과한 초지를 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면제		
③기타의 경우	100분의 50면제		
4.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초지법 제23조제4항제4	

①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②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100분의 50면제 100분의 50면제	호·제5호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①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면제 100분의 50면제	초지법 제23조제4항제6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읍·면지역에 한함